

수수료 및 계산예시

| | |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1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9 |
|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17 |
| 기업형IRP 퇴직연금 | 22 |
| 개인형IRP 퇴직연금 | 30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운용관리수수료

1.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아래의 수수료율에 따라 계산하고, 매년 계약응당일에 연간 계산된 금액을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퇴직보험(퇴직신탁 포함) 또는 당사 퇴직연금의 전환 시에는 전환금액에 대하여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할인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 전환 시부터 1년까지로 합니다.

| 구간별 금액 | 수수료율 |
|---------------------------|-------------------------|
| 100억 이하 부분 | 연 0.18%(일 0.000493151%) |
|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부분 | 연 0.15%(일 0.000410959%) |
| 500억 초과 부분 ~ 1,000억 이하 부분 | 연 0.10%(일 0.000273973%) |
| 1,000억 초과 부분 | 연 0.08%(일 0.000219178%) |

(예시) 운용관리수수료 계산에 대한 예시(적립금 규모가 2,000억인 경우)

| 적립금 구간별 금액 | 수수료율 | 연간 운용관리수수료 예시 |
|---------------------------|-----------------------------|--|
| 100억 이하 부분 | 연 0.18% (일 0.000493151%) | 100억*0.18% + 400억*0.15% + 500억*0.10% + 1,000억*0.08% (2.080억) |
|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부분 | 연 0.15% (일 0.000410959%) | |
| 500억 초과 부분 ~ 1,000억 이하 부분 | 연 0.10% (일 0.000273973%) | |
| 1,000억 초과 부분 | 연 0.08% (일 0.000219178%) | |

※ 위 (예시)는 연간 적립금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한 것임.

2.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계약연차 | 할인율 |
|---------|-----|
| 3차년도 | 10% |
| 4차년도 | 10% |
| 5차년도 이후 | 15% |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체결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2017년 12월 05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연차의 산정은 사용자의 퇴직연금규약상 명시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최초 시행일(이하 '제도시행일'이라 함)부터 기산합니다.

단, 제도시행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제도시행 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제2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05일 이후 기업분사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분사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 전 계약의 기산일을 적용합니다.

5.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까지 누적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6.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우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기업우대 할인율은 제2호의 계약연차별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되며, 기업우대 할인율 간 중복적용은 되지않고,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적용한 수수료율과 (별지4) 수수료 부과기준 운용관리수수료 1호에 따른 적립금 최고 구간의 최저수수료율인 0.08% 중 작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구 분 | 대상확인방법 |
|----------------|---|
|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명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법인번호 5,6번째 숫자가 51 |
| 마을기업 | 마을기업지정서(행정안전부 발행)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 |
| 자활기업 | 자활기업인증서(지자체 발급)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중앙자활센터 발급) 지역 자활센터 홈페이지 內 리스트 확인 |

-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해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회사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 할인을 적용합니다.
- 단, 중소기업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다음연도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수수료 감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자산관리수수료(보험계약)

1.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율로 하며, 해당 수수료는 년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별도로 납부합니다.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회사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연 0.30%(일 0.000821918%)로 하며, 해당 수수료는 년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까지 누적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 적립금 | 수수료율 |
|------------------------|-------------------------|
| 100억 이하 부분 | 연 0.39%(일 0.001068493%) |
|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부분 | 연 0.38%(일 0.001041096%) |
|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부분 | 연 0.30%(일 0.000821918%) |
| 1,000억 초과 부분 | 연 0.20%(일 0.000547945%) |

(예시) 자산관리수수료 계산에 대한 예시(적립금 규모가 2,000억인 경우)

| 적립금 구간별 금액 | 수수료율 | 연간 자산관리수수료 예시 |
|------------------------|-------------------------|---|
| 100억 이하 부분 | 연 0.39%(일 0.001068493%) | 100억*0.39%+400억*0.38% +500억*0.30% +1,000억*0.20% (5.410억) |
|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부분 | 연 0.38%(일 0.001041096%) | |
|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부분 | 연 0.30%(일 0.000821918%) | |
| 1,000억 초과 부분 | 연 0.20%(일 0.000547945%) | |

※ 위 (예시)는 연간 적립금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한 것임.

2. 실적배당형

- 가.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이상), TDF 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IF 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 이하),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은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연 0.35% (일 0.000958904%)를 곱하여 계산하며, 년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은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회사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해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연 0.20% (일 0.000547945%)를 곱하여 계산하며, 년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 다.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까지 누적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계약연차 | 할인율 |
|---------|-----|
| 4차년도 | 5% |
| 5차년도 | 10% |
| 6차년도 이후 | 20% |

계약연차의 산정은 회사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중인 계약(운용관리계약, 자산관리계약)의 최초부담금 납입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이하 '기산일'이라 합니다.)합니다.

단, 기산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2017년 12월 05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연차의 산정은 사용자의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최초 시행일(이하 '제도시행일'이라 함)부터 기산합니다.
- 단, 제도시행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제도시행 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제3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05일 이후 기업분사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분사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 전 계약의 기산일을 적용합니다.
6.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우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기업우대 할인율은 제3호의 계약연차별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되며, 기업우대 할인율 간 중복적용은 되지 않고,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적용한 수수료율과 (별지1) 제3조 제1호의 적립금 최고 구간의 최저수수료율인 0.20% 중 작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구 분 | 대상확인방법 |
|----------------|---|
|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명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법인번호 5,6번째 숫자가 51 |
| 마을기업 | 마을기업지정서(행정안전부 발행)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 |
| 자활기업 | 자활기업인증서(지자체 발급)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중앙자활센터 발급) 지역 자활센터 홈페이지 내 리스트 확인 |

-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해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회사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 할인을 적용합니다.
- 단, 중소기업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다음연도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수수료 감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자산관리수수료(신탁계약)

1. 자산관리수수료는 계산기간{계약체결일(또는 매년 계약체결일과 같은 일자)로부터 1년이 되는 날(계산기준일)까지} 동안의 매일의 신탁재산평가액에 대하여 해당하는 자산관리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매 계약양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신탁재산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일의 전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일의 전일, 계약서 제22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일의 전일을 당해 계산기준일로 보고,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 익일로부터 당해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한 결과 그 금액이 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수탁자는 사용자에게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4. 1호 및 2호에 적용하는 자산관리수수료율은 당해 계산기준일까지 매일의 신탁재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합니다.

| 신탁재산평가액 | 수수료율(연) |
|----------------------------|---------|
| 100 억원 이하 부분 | 0.21 % |
| 100 억원 초과 ~ 500 억원 이하 부분 | 0.20 % |
| 500 억원 초과 ~ 1,000 억원 이하 부분 | 0.18 % |
| 1,000 억원 초과 부분 | 0.15 % |

5. 1호 내지 4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계약연차 | 할인율 |
|---------|-----|
| 4차년도 | 5% |
| 5차년도 | 10% |
| 6차년도 이후 | 20% |

계약연차의 산정은 회사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중인 계약(운용관리계약, 자산관리계약)의 최초부담금 납입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이하 '기산일' 이라 합니다.)합니다.

단, 기산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2017년 12월 05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연차의 산정은 사용자의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최초 시행일(이하 '제도시행일'이라 함)부터 기산합니다.

단, 제도시행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제도시행 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제5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05일 이후 기업분사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분사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 전 계약의 기산일을 적용합니다.

8.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우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기업우대 할인율은 제5호의 계약연차별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되며, 기업우대 할인율 간 중복적용은 되지 않고,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적용한 수수료율과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4호의 신탁재산평가액 최고 구간의 최저수수료율인 0.15% 중 작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구 분 | 대상확인방법 |
|----------------|---|
|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명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법인번호 5,6번째 숫자가 51 |
| 마을기업 | 마을기업지정서(행정안전부 발행)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 |
| 자활기업 | 자활기업인증서(지자체 발급)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중앙자활센터 발급) 지역 자활센터 홈페이지 내 리스트 확인 |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제

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해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회사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 할인을 적용합니다.

단, 중소기업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다음연도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수수료 감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계정 운용보수

1.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가 없습니다.

2. 실적배당형

펀드종류별 운영보수는 아래의 율로 합니다. 또한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의 율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가. 운영보수

| 구 분 |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
|-----------------------------|----------------|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3750 |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4120 |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2200 |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4120 |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0.1915 |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3100 |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0.1650 |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5200 |
| TDF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2000 |
| TDF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3500 |
| TDF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2000 |
| TDF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2000 |
| TDF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3500 |
| TIF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 0.3500 |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000 |

나. 투자일임보수

| 구 분 |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
|-----------------------------|----------------|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3000 |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630 |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050 |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630 |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0.1335 |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050 |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0.0100 |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010 |
| TDF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1500 |
| TDF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010 |
| TDF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1500 |
| TDF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010 |
| TDF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1500 |
| TIF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 0.1500 |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010 |

다. 수탁보수

| 구 분 |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
|-----------------------------|----------------|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100 |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00 |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00 |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00 |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0.0100 |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200 |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0.0100 |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200 |
| TDF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IF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 0.0200 |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00 |

라. 사무관리보수

| 구 분 |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
|-----------------------------|----------------|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150 |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0.0150 |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0.0150 |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150 |
| TDF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IF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 0.0200 |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 보수 및 사무관리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부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수수료 수준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운용관리수수료

1.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아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매 부담금 납입 시 또는 매년 계약응당일에 별도로 납입합니다.

다만, 퇴직보험(퇴직신탁 포함) 또는 당사 퇴직연금의 전환 시에는 전환금액에 대하여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할인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 전환 시부터 1년까지로 합니다.

| 구간별 금액 | 수수료율 |
|---------------------------|-------------------------|
| 100억 이하 부분 | 연 0.18%(일 0.000493151%) |
|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부분 | 연 0.15%(일 0.000410959%) |
| 500억 초과 부분 ~ 1,000억 이하 부분 | 연 0.10%(일 0.000273973%) |
| 1,000억 초과 부분 | 연 0.08%(일 0.000219178%) |

가입자 추가부담 시 수수료율은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연 0.1%(일 0.000273973%)로 계산하고, 수수료의 부담주체는 가입자로 합니다.

(예시) 운용관리수수료 계산에 대한 예시(적립금 규모가 2,000억인 경우)

| 적립금 구간별 금액 | 수수료율 | 연간 운용관리수수료 예시 |
|---------------------------|-----------------------------|--|
| 100억 이하 부분 | 연 0.18% (일 0.000493151%) | $100\text{억} \times 0.18\%$ $+ 400\text{억} \times 0.15\%$ $+ 500\text{억} \times 0.10\%$ $+ 1,000\text{억} \times 0.08\%$ (2.080억) |
|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부분 | 연 0.15% (일 0.000410959%) | |
| 500억 초과 부분 ~ 1,000억 이하 부분 | 연 0.10% (일 0.000273973%) | |
| 1,000억 초과 부분 | 연 0.08% (일 0.000219178%) | |

※ 위 (예시)는 연간 적립금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한 것임.

2.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계약연차 | 할인율 |
|---------|-----|
| 3차년도 | 10% |
| 4차년도 | 10% |
| 5차년도 이후 | 15% |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체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2017년 12월 05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연차의 산정은 사용자의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최초 시행일(이하 '제도시행일'이라 함)부터 기산합니다. 단, 제도시행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제도시행 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제2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05일 이후 기업분사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분사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 전 계약의 기산일을 적용합니다.

5. 다만,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25일까지 연금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며, 연금규약에 따라 가입자 추가부담 시 수수료의 부담주체가 사용자인 경우 매 부담금 납입 시 별도로 납입하며, 수수료의 부담주체가 가입자인 경우 매년 계약응당일에 연간 계산된 금액을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6.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우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기업우대 할인율은 제2호의 계약연차별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되며, 기업우대 할인율 간 중복적용은 되지않고,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기업 대해서는 50% 할인을 적용한 수수료율과 (별지3) 수수료 부과기준 운용관리수수료 1호에 따른 적립금 최고 구간의 최저수수료율인 0.08% 중 작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구 분 | 대상확인방법 |
|----------------|---|
|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명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법인번호 5,6번째 숫자가 51 |
| 마을기업 | 마을기업지정서(행정안전부 발행)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 |
| 자활기업 | 자활기업인증서(지자체 발급)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중앙자활센터 발급) 지역 자활센터 홈페이지 內 리스트 확인 |

-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해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회사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 할인을 적용합니다.
- 단, 중소기업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다음연도 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수수료 감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자산관리수수료(보험계약)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의 자산관리수수료 부담주체는 사용자이며, 가입자 부담금의 자산관리수수료 부담주체는 가입자입니다.

1.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율로 하며, 해당 수수료는 년 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별도로 납부하며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매일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 적립금 | 수수료율 |
|------------------------|-------------------------|
| 100억 이하 부분 | 연 0.43%(일 0.001178082%) |
|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부분 | 연 0.41%(일 0.001123288%) |
|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부분 | 연 0.35%(일 0.000958904%) |
| 1,000억 초과 부분 | 연 0.30%(일 0.000821918%) |

단, 상시 3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연 0.28%(일 0.000767123%)로 하며, 해당 수수료는 년 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별도로 납부하며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매일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단,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납입주기 별로 합산하여 납입주기에 따라 별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실적배당형

가.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글로벌이며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TDF 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IF 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 이하),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은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연 0.35% (일 0.000958904%)를 곱하여 계산하며, 년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별도로 납부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매년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상시 3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해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연 0.20% (일 0.000547945%)를 곱하여 계산하며, 년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별도로 납부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매년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3.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까지 누적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중도해지일까지 별도로 납입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이 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25일까지 연금규약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계약연차 | 할인율 |
|---------|-----|
| 4차년도 | 5% |
| 5차년도 | 10% |
| 6차년도 이후 | 20% |

계약연차의 산정은 회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중인 계약(운용관리계약, 자산관리계약)의 최초부담금 납입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이하 '기산일'이라 합니다.)합니다.

단, 기산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2017년 12월 05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연차의 산정은 사용자의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최초 시행일(이하 '제도시행일'이라 함)부터 기산합니다.

단, 제도시행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제도시행 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제4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05일 이후 기업분사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분사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 전 계약의 기산일을 적용합니다.
7.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우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기업우대 할인율은 제4호의 계약연차별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되며, 기업우대 할인율 간 중복적용은 되지 않고,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 상품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적용한 수수료율과 (별지1) 제3조제1호의 적립금 최고 구간의 최저수수료율인 0.30% 중 작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구 분 | 대상확인방법 |
|----------------|---|
|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명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법인번호 5,6번째 숫자가 51 |
| 마을기업 | 마을기업지정서(행정안전부 발행)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 |
| 자활기업 | 자활기업인증서(지자체 발급)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중앙자활센터 발급) 지역 자활센터 홈페이지 내 리스트 확인 |

-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해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회사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 할인을 적용합니다.
- 단, 중소기업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다음연도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수수료 감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자산관리수수료(신탁계약)

- 자산관리수수료는 계산기간{계약체결일(또는 매년 계약체결일과 같은 일자)로부터 1년이 되는 날(계산기준일)까지} 동안의 매일의 신탁재산평가액에 대하여 해당하는 자산관리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매 계약응당일로부터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10일 이내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하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일의 전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일의 전일, 계약서 제22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일의 전일을 당해 계산기준일로 보고,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신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신탁금 지급일의 전일을 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 익일로부터 당해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한 결과 그 금액이 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수탁자는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4. 1호 및 2호에 적용하는 자산관리수수료율은 당해 계산기준일까지 매일의 신탁재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합니다.

| 신탁재산평가액 | 수수료율(연) |
|----------------------------|---------|
| 100 억원 이하 부분 | 0.26 % |
| 100 억원 초과 ~ 500 억원 이하 부분 | 0.25 % |
| 500 억원 초과 ~ 1,000 억원 이하 부분 | 0.23 % |
| 1,000 억원 초과 부분 | 0.20 % |

5. 4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일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하인 경우 자산관리수수료율은 연 0.23%로 합니다.

6. 1호 내지 4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계약연차 | 할인율 |
|---------|-----|
| 4차년도 | 5% |
| 5차년도 | 10% |
| 6차년도 이후 | 20% |

계약연차의 산정은 회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중인 계약(운용관리계약, 자산관리계약)의 최초부담금 납입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이하 '기산일' 이라 합니다.)합니다.

단, 기산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2017년 12월 05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연차의 산정은 사용자의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최초 시행일(이하 '제도시행일'이라 함)부터 기산합니다.

단, 제도시행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제도시행 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제6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05일 이후 기업분사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분사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 전 계약의 기산일을 적용합니다.

9.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 매일의 신탁재산평가액으로 하고 가입자에게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가입자부담금으로 구성된 매일의 신탁재산평가액으로 하며, 매일의 해당 신탁재산평가액에 적용할 자산관리수수료율은 매일의 신탁재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자산관리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사용자와 가입자들이 납입한 매일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10.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우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기업우대 할인율은 제6호의 계약연차별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되며, 기업우대 할인율 간 중복적용은 되지 않고,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적용한 수수료율과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4호의 신탁재산평가액 최고 구간의 최저수수료율인 0.20% 중 작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구 분 | 대상확인방법 |
|----------------|---|
|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명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법인번호 5,6번째 숫자가 51 |
| 마을기업 | 마을기업지정서(행정안전부 발행)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 |
| 자활기업 | 자활기업인증서(지자체 발급)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중앙자활센터 발급) 지역 자활센터 홈페이지 내 리스트 확인 |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해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회사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 할인을 적용합니다.

단, 중소기업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다음연도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수수료 감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계정 운용보수

1.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가 없습니다.

2. 실적배당형

펀드종류별 운영보수는 아래의 율로 합니다. 또한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의 율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가. 운영보수

| 구 분 |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
|-----------------------------|----------------|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3750 |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4120 |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2200 |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4120 |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0.1915 |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3100 |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0.1650 |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5200 |
| TDF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2000 |
| TDF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3500 |
| TDF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2000 |
| TDF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2000 |
| TDF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3500 |
| TIF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 0.3500 |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000 |

나. 투자일임보수

| 구 분 |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
|-----------------------------|----------------|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3000 |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630 |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050 |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630 |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0.1335 |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050 |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0.0100 |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010 |
| TDF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1500 |
| TDF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010 |
| TDF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1500 |
| TDF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010 |
| TDF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1500 |
| TIF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 0.1500 |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010 |

다. 수탁보수

| 구 분 |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
|-----------------------------|----------------|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100 |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00 |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00 |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00 |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0.0100 |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200 |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0.0100 |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200 |
| TDF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IF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 0.0200 |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00 |

라. 사무관리보수

| 구 분 |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
|-----------------------------|----------------|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150 |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0.0150 |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0.0150 |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150 |
| TDF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IF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 0.0200 |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 보수 및 사무관리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부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수수료 수준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합니다.

□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운용관리수수료

1. 매일 동일한 연금규약을 적용받는 다른 계약과 합산한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단일요율을 적용하며, 매년 계약응당일에 별도로 납입합니다.

다만, 퇴직보험(퇴직신탁 포함) 또는 당사 퇴직연금의 전환 시에는 전환금액에 대하여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 전환 시부터 1년까지로 합니다.

| 구간별 금액 | 수수료율 |
|--------|-------------------------|
| 전 구간 | 연 0.10%(일 0.000273973%) |

가입자 부담금의 수수료율은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연 0.1%(일 0.000273973%)로 계산하고, 수수료의 부담주체는 가입자로 합니다.

2.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계약연차 | 할인율 |
|---------|-----|
| 3차년도 | 10% |
| 4차년도 | 10% |
| 5차년도 이후 | 15% |

3. 계약연차의 산정은 운용관리계약의 최초부담금 납입일부터 기산(이하 ‘기산일’이라 함)하며, 이 계약 체결 이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이전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최초 시행일(이하 ‘제도시행일’이라 함)로부터 기산합니다.

단, 제도시행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제도시행 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제2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기업분사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분사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 전 기산일을 적용합니다.

5.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우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기업우대 할인율은 제2호의 계약연차별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되며, 기업우대 할인율 간 중복적용은 되지 않고,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일부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 분 | 대상확인방법 |
|----------------|---|
|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명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법인번호 5,6번째 숫자가 51 |
| 마을기업 | 마을기업지정서(행정안전부 발행)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 |
| 자활기업 | 자활기업인증서(지자체 발급)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중앙자활센터 발급) 지역 자활센터 홈페이지 내 리스트 확인 |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해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회사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 할인을 적용합니다.

단, 중소기업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다음연도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수수료 감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자산관리수수료(보험계약)

표준형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의 자산관리수수료 부담주체는 사용자이며, 가입자 부담금의 자산관리수수료 부담주체는 가입자입니다.

1.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

매일 동일한 연금규약을 적용받는 다른 계약과 합산한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단일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년 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납입주기 별로 합산하여 납입주기에 따라 별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 수수료율 |
|-------------------|-------------------------|
| 50억 미만 | 연 0.26%(일 0.000712329%) |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 연 0.25%(일 0.000684932%) |
| 100억 이상 ~ 150억 미만 | 연 0.24%(일 0.000657534%) |
| 150억 이상 ~ 200억 미만 | 연 0.23%(일 0.000630137%) |
| 200억 이상 | 연 0.22%(일 0.000602740%) |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연 0.20% (일 0.000547945%)로 계산하며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2. 실적배당형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이상), TDF 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DF 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TIF 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 이하),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은 매일 동일한 연금규약을 적용받는 다른 계약과 합산한 적립금에 대하여 연 0.20% (일 0.000547945%)를 곱하여 계산하며, 년 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별도로 납부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매년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3.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까지 누적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중도해지일까지 별도로 납입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4.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 |
|---------|-----|
| 계약연차 | 할인율 |
| 4차년도 이후 | 5% |

계약연차의 산정은 회사와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중인 계약(운용관리계약, 자산관리계약)의 최초부담금 납입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이하 ‘기산일’이라 합니다.)합니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 체결 이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이전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최초 시행일(이하 ‘제도시행일’이라 함)부터 기산합니다.

단, 제도시행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제도시행 담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담당일로 하여 제4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기업분사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분사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 전 계약의 기산일을 적용합니다.

7.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우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기업우대 할인율은 제4호의 계약연차별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되며, 기업우대 할인율 간 중복적용은 되지 않고,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일부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적용한 수수료율과 제1호의 자산관리수수료율에 따른 적립금 최고 구간의 최저수수료율인 0.22% 중 작은 기준을 적용함.

| 구 분 | 대상확인방법 |
|----------------|---|
|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명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법인번호 5,6번째 숫자가 51 |
| 마을기업 | 마을기업지정서(행정안전부 발행)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 |
| 자활기업 | 자활기업인증서(지자체 발급)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중앙자활센터 발급) 지역 자활센터 홈페이지 내 리스트 확인 |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해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회사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 할인을 적용.

단, 중소기업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다음연도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수수료 감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계정 운용보수

1.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가 없습니다.

2. 실적배당형

펀드종류별 운영보수는 아래의 율로 합니다. 또한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의 율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가. 운영보수

| 구 분 |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
|-----------------------------|----------------|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3750 |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4120 |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2200 |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4120 |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0.1915 |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3100 |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0.1650 |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5200 |
| TDF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2000 |
| TDF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3500 |
| TDF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2000 |
| TDF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2000 |
| TDF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3500 |
| TIF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 0.3500 |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000 |

나. 투자일임보수

| 구 분 |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
|-----------------------------|----------------|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3000 |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630 |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050 |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630 |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0.1335 |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050 |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0.0100 |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010 |
| TDF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1500 |
| TDF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010 |
| TDF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1500 |
| TDF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010 |
| TDF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1500 |
| TIF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 0.1500 |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010 |

다. 수탁보수

| 구 분 |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
|-----------------------------|----------------|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100 |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00 |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00 |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00 |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0.0100 |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200 |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0.0100 |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200 |
| TDF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IF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 0.0200 |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00 |

라. 사무관리보수

| 구 분 |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
|-----------------------------|----------------|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150 |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0.0150 |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0.0150 |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150 |
| TDF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IF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 0.0200 |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부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수수료 수준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합니다.

□ 기업형 IRP 퇴직연금

○ 운용관리수수료

1.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아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매 부담금 납입 시 또는 매년 계약응당일에 별도로 납입합니다.

다만, 퇴직보험(퇴직신탁 포함) 또는 당사 퇴직연금의 전환 시에는 전환금액에 대하여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할인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 전환 시부터 1년까지로 합니다.

| 구간별 금액 | 수수료율 |
|---------------------------|-------------------------|
| 100억 이하 부분 | 연 0.18%(일 0.000493151%) |
|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부분 | 연 0.15%(일 0.000410959%) |
| 500억 초과 부분 ~ 1,000억 이하 부분 | 연 0.10%(일 0.000273973%) |
| 1,000억 초과 부분 | 연 0.08%(일 0.000219178%) |

가입자 추가부담 시 수수료율은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연 0.1%(일 0.000273973%)로 계산하고, 수수료의 부담주체는 가입자로 합니다.

(예시) 운용관리수수료 계산에 대한 예시(적립금 규모가 2,000억인 경우)

| 적립금 구간별 금액 | 수수료율 | 연간 운용관리수수료 예시 |
|---------------------------|-----------------------------|--|
| 100억 이하 부분 | 연 0.18% (일 0.000493151%) | 100억*0.18% + 400억*0.15% + 500억*0.10% + 1,000억*0.08% (2.080억) |
|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부분 | 연 0.15% (일 0.000410959%) | |
| 500억 초과 부분 ~ 1,000억 이하 부분 | 연 0.10% (일 0.000273973%) | |
| 1,000억 초과 부분 | 연 0.08% (일 0.000219178%) | |

※ 위 (예시)는 연간 적립금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한 것임.

2.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계약연차 | 할인율 |
|---------|-----|
| 3차년도 | 10% |
| 4차년도 | 10% |
| 5차년도 이후 | 15% |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체결한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2017년 12월 05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연차의 산정은 사용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 최초 시행일(이하 '제도시행일' 이라 함)부터 기산합니다.

단, 제도시행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제도시행 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제2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05일 이후 기업분사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분사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 전 계약의 기산일을 적용합니다.

5. 다만,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25일까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 추가부담 시 수수료의 부담주체가 사용자인 경우 매 부담금 납입 시 별도로 납입하며, 수수료의 부담주체가 가입자인 경우 매년 계약응당일에 연간 계산된 금액을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6.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우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기업우대 할인율은 제2호의 계약연차별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되며, 기업우대 할인율 간 중복적용은 되지 않고,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기업] 중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적용한 수수료율과 (별지3) 수수료 부과기준 운용관리수수료 1호에 따른 적립금 최고 구간의 최저수수료율인 0.08% 중 작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구 분 | 대상확인방법 |
|----------------|---|
|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명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법인번호 5,6번째 숫자가 51 |
| 마을기업 | 마을기업지정서(행정안전부 발행)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 |
| 자활기업 | 자활기업인증서(지자체 발급)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중앙자활센터 발급) 지역 자활센터 홈페이지 내 리스트 확인 |

-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해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회사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 할인을 적용합니다.
- 단, 중소기업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다음연도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수수료 감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자산관리수수료(보험계약)

사용자 부담금의 자산관리수수료 부담주체는 사용자이며, 가입자 부담금의 자산관리수수료 부담주체는 가입자입니다.

1.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율로 하며, 사용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전체 적립금에 대하여 계산한 수수료에 사용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년 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별도로 납부합니다.

가입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전체 적립금에 대하여 계산한 수수료에 가입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매일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 | |
|------|------------------------|
| 수수료율 | 연0.28%(일 0.000767123%) |
|------|------------------------|

다만,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이 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25일까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실적배당형

실적배당형보험은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율로 하며, 사용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전체 적립금에 대하여 계산한 수수료에 사용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년 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별도로 납부합니다.

가입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전체 적립금에 대하여 계산한 수수료에 가입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년 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 적립금 | 수수료율 |
|-----------|------------------------|
| 30억 이하 부분 | 연0.20%(일 0.000547945%) |
| 30억 초과 부분 | 연0.18%(일 0.000493151%) |

(예시) 자산관리수수료 계산에 대한 예시(적립금 규모가 100억인 경우)

| 적립금 구간별 금액 | 수수료율 | 연간 자산관리수수료 예시 |
|------------|------------------------|---------------------------------|
| 30억 이하 부분 | 연0.20%(일 0.000547945%) | 30억*0.20%+70억*0.18% (0.186억) |
| 30억 초과 부분 | 연0.18%(일 0.000493151%) | |

※ 위 (예시)는 연간 적립금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한 것임.

3.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까지 누적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중도해지일까지 별도로 납입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이 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25일까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계약연차 | 할인율 |
|---------|-----|
| 4차년도 | 5% |
| 5차년도 | 10% |
| 6차년도 이후 | 20% |

계약연차의 산정은 회사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중인 계약(운용관리계약, 자산관리계약)의 최초부담금 납입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이하 ‘기산일’ 이라 합니다.)합니다.

단, 기산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2017년 12월 05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연차의 산정은 사용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 최초 시행일(이하 ‘제도시행일’ 이라 함)부터 기산합니다.

단, 제도시행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제도시행 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제4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05일 이후 기업분사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분사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 전 계약의 기산일을 적용합니다.

7.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우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기업우대 할인율은 제4호의 계약연차별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되며, 기업우대 할인율 간 중복적용은 되지 않

고,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적용한 수수료율과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의 실적배당형보험 적립금 최고 구간의 최저수수료율인 0.18% 중 작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구 분 | 대상확인방법 |
|----------------|---|
|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명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법인번호 5,6번째 숫자가 51 |
| 마을기업 | 마을기업지정서(행정안전부 발행)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 |
| 자활기업 | 자활기업인증서(지자체 발급)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중앙자활센터 발급) 지역 자활센터 홈페이지 내 리스트 확인 |

-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해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회사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 할인을 적용합니다.
- 단, 중소기업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다음연도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수수료 감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자산관리수수료(신탁계약)

1. 자산관리수수료는 계산기간{계약체결일(또는 매년 계약체결일과 같은 일자)로부터 1년이 되는 날(계산기준일)까지} 동안의 매일의 신탁재산평가액에 대하여 해당하는 자산관리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매 계약응당일로부터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10일 이내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하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일의 전일,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일의 전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신탁 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일의 전일을 당해 계산기준일로 보고,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신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신탁금 지급일의 전일을 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 익일로부터 당해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한 결과 그 금액이 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수탁자는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별도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1호 및 2호에 적용하는 자산관리수수료율은 당해 계산기준일까지 매일의 신탁재산평가액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정하기로 합니다.

| | |
|---------|--------|
| 수수료율(연) | 0.23 % |
|---------|--------|

5. 1호 내지 4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 |
|---------|-----|
| 계약연차 | 할인율 |
| 4차년도 | 5% |
| 5차년도 | 10% |
| 6차년도 이후 | 20% |

계약연차의 산정은 회사와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제도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중인계약(운용관리계약, 자산관리계약)의 최초부담금 납입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이하 ‘기산일’ 이라 합니다.)합니다. 단, 기산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2017년 12월 05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연차의 산정은 사용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 최초 시행일(이하 ‘제도시행일’ 이라 함)부터 기산합니다. 단, 제도시행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제도시행 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제5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05일 이후 기업분사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분사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 전 계약의 기산일을 적용합니다.

8.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 매일의 신탁재산평가액으로 하고 가입자에게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가입자 부담금으로 구성된 매일의 신탁재산평가액으로 하며, 매일의 해당 신탁재산평가액에 적용할 자산관리수수료율은 매일의 신탁재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자산관리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사용자와 가입자들이 납입한 매일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9.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우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기업우대 할인율은 제5호의 계약연차별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되며, 기업우대 할인율 간 중복적용은 되지 않고,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 분 | 대상확인방법 |
|----------------|---|
|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명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법인번호 5,6번째 숫자가 51 |
| 마을기업 | 마을기업지정서(행정안전부 발행)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 |
| 자활기업 | 자활기업인증서(지자체 발급)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중앙자활센터 발급) 지역 자활센터 홈페이지 내 리스트 확인 |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해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회사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 할인을 적용합니다.

단, 중소기업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다음연도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수수료 감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계정 운용보수

1.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가 없습니다.

2. 실적배당형

펀드종류별 운영보수는 아래의 율로 합니다. 또한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의 율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가. 운영보수

| 구 분 |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
|-----------------------------|----------------|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3750 |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4120 |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2200 |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4120 |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0.1915 |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3100 |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0.1650 |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5200 |
| TDF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2000 |
| TDF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3500 |
| TDF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2000 |
| TDF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2000 |
| TDF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3500 |
| TIF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 0.3500 |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000 |

나. 투자일임보수

| 구 분 |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
|-----------------------------|----------------|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3000 |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630 |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050 |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630 |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0.1335 |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050 |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0.0100 |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010 |
| TDF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1500 |
| TDF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010 |
| TDF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1500 |
| TDF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010 |
| TDF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1500 |
| TIF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 0.1500 |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010 |

다. 수탁보수

| 구 분 |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
|-----------------------------|----------------|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100 |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00 |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00 |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00 |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0.0100 |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200 |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0.0100 |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200 |
| TDF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IF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 0.0200 |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00 |

라. 사무관리보수

| 구 분 |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
|-----------------------------|----------------|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150 |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0.0150 |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0.0150 |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150 |
| TDF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IF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 0.0200 |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 보수 및 사무관리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부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수수료 수준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합니다.

□ 개인형 IRP 퇴직연금

○ 운용관리수수료

1.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연 0.1%(일 0.000273973%)로 계산하고, 매년 계약응당일에 연간 계산된 금액을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퇴직보험(퇴직신탁 포함) 또는 당사 퇴직연금에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에 대하여 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할인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 전환 시부터 1년까지로 합니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계약응당일 기준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의한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 적립금에 대해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관리수수료를 계산합니다.

가. 운용관리수수료는 기본수수료(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상관없이 산정하는 수수료) 0.08%와 운용손익 수수료(적립금의 운용손익에 따라 산정하는 수수료) 0.02%를 적용합니다.

즉, 기준지표보다 아래 운용손익 수익률 측정방법에 의해 계산된 운용손익 수익률이 높을 경우 0.10%를 적용, 같을 경우 0.08%, 낮을 경우 0.06%를 적용하며, 매년 계약응당일에 운용손익 수수료 산출기간동안의 연평균 적립금에 대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운용손익 수익률이 음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운용손익 수익률이 기준지표를 상회하더라도 손익수수료는 0%로 적용하여 운용관리수수료는 0.08%를 적용합니다.

예시) 운용손익 수수료를 적용방법

A. 운용손익 수익률이 양의 수익률 일 때

| 구 분 | 기본 수수료율 | 운용손익 수수료율 | 운용관리 수수료율 |
|-----------------|------------|--------------|--------------|
| 운용손익 수익률 > 기준지표 | 0.08% | + 0.02% | 0.10% |
| 운용손익 수익률 = 기준지표 | 0.08% | 0.00% | 0.08% |
| 운용손익 수익률 < 기준지표 | 0.08% | -0.02% | 0.06% |

B. 운용손익 수익률이 음의 수익률 일 때

| 구 분 | 기본 수수료율 | 운용손익 수수료율 | 운용관리 수수료율 |
|---------------------|------------|--------------|--------------|
| 기준지표 ≤ 운용손익 수익률 < 0 | 0.08% | 0.00% | 0.08% |
| 운용손익 수익률 < 기준지표 < 0 | 0.08% | -0.02% | 0.06% |

나. 운용손익 수수료의 적용방법

A. 운용손익 측정대상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의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의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 상품(이하 “대상 상품”) 적립금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B. 운용손익 수수료 적용요건

계약응당일 기준 동일한 대상 상품을 1년 이상 운용 중일 경우에 적용합니다.

즉, 대상 상품의 운용일수가 수수료 산출기간의 운용일수와 동일하거나 클 경우에 적용합니다.

C. 운용손익 수수료 산출기간

직전 계약응당일부터 당해 계약응당일 전일 또는 계산기준일(급여지급 신청일, 최종 연금지급일, 전부 중도인출 신청일, 중도해지 신청일, 계약이전 신청일)의 전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운용손익 수수료를 산출합니다.

D. 운용손익 수익률 측정방법

운용손익 수익률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1의 적립금 운용수익률 산출방식으로 계산된 수익률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하며 위험그룹별 포트폴리오 단위로 측정합니다.

E. 기준지표의 적용

매분기별로 산정한 기준지표를 익익월부터 3개월간 적용합니다.

예시) 24년 2분기의 최근 1년 수익률로 산정된 기준지표는 24년 8월부터 3개월간(8,9,10월) 운용손익 수수료 계산시 기준지표로 적용합니다.

3. 전자청약(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회사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 운용관리수수료의 50%를 할인합니다.

4.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연차별 할인율

| 계약연차 | 할인율 |
|---------|-----|
| 3차년도 | 10% |
| 4차년도 | 10% |
| 5차년도 이후 | 15% |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체결한 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2017년 12월 05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연차의 산정은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개인형) 최초 시행일(이하 ‘제도시행일’ 이라 함)부터 기산합니다.

단, 제도시행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제도시행 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제1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함. 단,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부과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아래 최종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 수수료 부과대상 기간으로 하여 누적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 구분 | 최종 계산기준일 |
|---|----------|
| 제15조에 의한 급여지급의 경우(단, 가입자가 신탁계약으로 연금지급을 수령하는 경우는 제외) | 급여지급 신청일 |
| 가입자가 신탁계약으로 연금지급을 수령하는 경우 | 최종 연금지급일 |
|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 중도해지 신청일 |
|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 | 계약이전 신청일 |

○ 자산관리수수료(보험계약)

1.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율로 하며, 해당 수수료는 매일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년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별도로 납부합니다.

단,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되,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하여 자산관리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전자청약(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회사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 자산관리수수료의 50%를 할인합니다.

| 적립금 | 수수료율 |
|-----------|------------------------|
| 10억 이하 부분 | 연0.40%(일 0.001095890%) |
| 10억 초과 부분 | 연0.38%(일 0.001041096%) |

(예시) 자산관리수수료 계산에 대한 예시(적립금 규모가 100억인 경우)

| 적립금 구간별 금액 | 수수료율 | 연간 자산관리수수료 예시 |
|------------|--------------------------|---------------------------------|
| 10억 이하 부분 | 연 0.40% (일 0.001095890%) | 10억*0.40%+90억*0.38% (0.382억) |
| 10억 초과 부분 | 연 0.38% (일 0.001041096%) | |

※ 위 (예시)는 연간 적립금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한 것임.

2. 실적배당형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율로 하며, 해당 수수료는 년 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단,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되,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하여 자산관리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전자청약(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회사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 자산관리수수료의 50%를 할인합니다.

| 적립금 | 수수료율 |
|-----------|------------------------|
| 10억 이하 부분 | 연0.35%(일 0.000958904%) |
| 10억 초과 부분 | 연0.33%(일 0.000904110%) |

(예시) 자산관리수수료 계산에 대한 예시(적립금 규모가 100억인 경우)

| 적립금 구간별 금액 | 수수료율 | 연간 자산관리수수료 예시 |
|------------|-------------------------|---------------------------------|
| 10억 이하 부분 | 연0.35% (일 0.000958904%) | 10억*0.35%+90억*0.33% (0.332억) |
| 10억 초과 부분 | 연0.33% (일 0.000904110%) | |

※ 위 (예시)는 연간 적립금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한 것임.

3.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까지 누적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4.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 |
|---------|-----|
| 계약연차 | 할인율 |
| 4차년도 이후 | 5% |

계약연차의 산정은 회사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개인형)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중인 계약(운용관리계약, 자산관리계약)의 최초부담금 납입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이하 ‘기산일’ 이라 합니다.)합니다. 단, 기산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2017년 12월 05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연차의 산정은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개인형) 최초 시행일(이하 ‘제도시행일’ 이라 함)부터 기산합니다. 단, 제도시행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제도시행 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제4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 자산관리수수료(신탁계약)

- 자산관리수수료는 계산기간{계약체결일(또는 매년 계약체결일과 같은 일자)로부터 1년이 되는 날(계산기준일)까지} 동안의 매일의 신탁재산평가액에 대하여 해당하는 자산관리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매 계약응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일의 전일,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일의 전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일의 전일을 당해 계산기준일로 보고,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 익일로부터 당해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까지로 합니다.
- 제1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한 결과 그 금액이 수수료금액에 미달할 경우 수탁자는 가입자에게 미달하는 수수료금액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자산관리수수료율은 당해 계산기준일까지 매일의 신탁재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합니다.

| | |
|------------|---------|
| 신탁재산평가액 | 수수료율(연) |
| 10억원 이하 부분 | 0.40% |
| 10억원 초과 부분 | 0.38% |

-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 |
|---------|-----|
| 계약연차 | 할인율 |
| 4차년도 이후 | 5% |

계약연차의 산정은 회사와 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제도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중인 계약(운용관리계약, 자산관리계약)의 최초부담금 납입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이하 ‘기산일’ 이라 합니다.)합니다. 단, 기산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2017년 12월 05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연차의 산정은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개인형) 최초 시행일(이하 ‘제도시행일’ 이라 함)부터 기산합니다. 단, 제도시행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제도시행 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제5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 전자청약(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회사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 자산관리수수료의 50%를 할인합니다.
-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에 계약해지 신청을 한

경우 해당기간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9. 제8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초과시에는 전기간에 대해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10. 제8호, 제9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특별계정 운용보수

1.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가 없습니다.

2. 실적배당형

펀드종류별 운영보수는 아래의 율로 합니다. 또한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의 율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가. 운영보수

| 구 분 |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
|-----------------------------|----------------|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3750 |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4120 |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2200 |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4120 |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0.1915 |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3100 |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0.1650 |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5200 |
| TDF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2000 |
| TDF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3500 |
| TDF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2000 |
| TDF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2000 |
| TDF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3500 |
| TIF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 0.3500 |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000 |

나. 투자일임보수

| 구 분 |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
|-----------------------------|----------------|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3000 |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630 |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050 |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630 |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0.1335 |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1050 |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0.0100 |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010 |
| TDF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1500 |
| TDF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010 |
| TDF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1500 |
| TDF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010 |
| TDF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1500 |
| TIF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 0.1500 |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010 |

다. 수탁보수

| 구 분 |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
|-----------------------------|----------------|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100 |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00 |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00 |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00 |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0.0100 |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200 |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0.0100 |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200 |
| TDF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IF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 0.0200 |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00 |

라. 사무관리보수

| 구 분 | 적립금기준 연수수료율(%) |
|-----------------------------|----------------|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150 |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0.0150 |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0.0150 |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0.0150 |
| TDF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DF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이하) | 0.0200 |
| TIF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 0.0200 |
| 플러스알파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0.0150 |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부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수수료 수준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합니다.

□ 교육수수료

○ 적용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계산예시(자산관리수수료 보험계약 기준)

(단위 : 백만원)

| 기업규모 및 적립기간 | | 수수료 종류 | 확정급여형 | | 확정기여형 | |
|-------------------|---------|-----------|---------|---------|---------|---------|
| | | | 운용관리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 운용관리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
| 소기업 ¹⁾ | 초년도 | | 0.3 | 0.6 | 0.3 | 0.6 |
| | 2차년도 | | 0.3 | 0.6 | 0.3 | 0.7 |
| | 10년간 누계 | | 3.4 | 7.4 | 3.4 | 8.1 |
| 중기업 ²⁾ | 초년도 | | 1.8 | 3.9 | 1.8 | 4.3 |
| | 2차년도 | | 2.0 | 4.3 | 2.0 | 4.7 |
| | 10년간 누계 | | 23.0 | 49.1 | 23.0 | 54.2 |
| 대기업 ³⁾ | 초년도 | | 33.0 | 77.0 | 33.0 | 84.0 |
| | 2차년도 | | 36.0 | 84.6 | 36.0 | 92.2 |
| | 10년간 누계 | | 409.7 | 966.1 | 409.7 | 1,050.5 |

주) 수수료 계산 시 산정기준

| 구 분 | 가입자수 | 부 담 금 | 적 립 금 | | | | |
|--------|-------|-------------------------------|-------|-------|------|-----|-------|
| |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 10년차 |
| 1. 소기업 | 30명 | 초년도 : 1.5억 2차년도 이후 : 0.15억 | 1.5억 | 1.65억 | 1.8억 | ... | 2.85억 |
| 2. 중기업 | 100명 | 초년도 : 10억 2차년도 이후 : 1억 | 10억 | 11억 | 12억 | ... | 19억 |
| 3. 대기업 | 1000명 | 초년도 : 200억 2차년도 이후 : 20억 | 200억 | 220억 | 240억 | ... | 380억 |